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동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79
------	------

발의일자 : 2024. 8. 22.

발 의 자 : 정재동 의원

찬 성 자 : 장규권 의원

## 1. 제안이유

금천구에서 발생한 일반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조례의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화재피해주민을 위한 지원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4. 8. 23. ~ 8. 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항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2. 긴급 급식 지원
  3. 심리회복 지원
  4.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그 밖의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9.] [법률 제18204호, 2021. 6. 8., 제정]

제5조(화재조사의 실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